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604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60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29.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차별행위를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며, 법률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 차별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장애인 차별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차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약 187일에 이르는 등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5조의2(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 또는 제38조에 따라 진정한 사람에 대한 법률상담 2. 소속 변호사에 의한 제38조에 따른 진정의 대리 3. 소속 변호사에 의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신청의 대리 4. 소속 변호사에 의한 피해자의 소송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

	<u>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u>④ 그 밖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2. 검토의견

□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4조),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및 직권조사(현행법 제38조 및 제39조),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현행법 제43조), 손해배상 및 법원의 구제조치(현행법 제46조 및 제48조),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음(현행법 제49조).

-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현행법 제38조 및 제39조).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차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차별행위자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¹⁾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함(현행법 제41조 및 제42조).
-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차별행위, 반복적 차별행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재발방지 조치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현행법 제43조),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가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현행법 제44조 및 제50조).
- 또한, 차별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현행법 제46조), 차별행위 관련 분쟁에서의 입증책임 배분(현행법 제47조), 법원의 임시조치 및 적극적 구제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현행법 제48조),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차별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헌행법 제49조)(참고자료 1: 관련 현행 법조문).

< 현행법상 권리구제 절차 개요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20100>)

- 개정안은 장애인 차별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 및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상담과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법률 정보 부족, 절차 수행의 어려움,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현행법상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25년까지,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접수 건수는 19,130건, 평균 처리 기간은 167일로 나타났으며,

- 이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854건, 법무부장관의 시정 명령 건수는 6건으로 파악됨.²⁾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복지법」³⁾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

2) 보건복지부 제출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및 피해장애인 지원 등 장애인학대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장애인 차별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리, 법무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 및 소송대리까지 수행하는 것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범위와 인력 구조상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2026년 6월 기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개소(중앙 1개소, 지역 19개소) 중 변호사가 배치된 기관은 2개소(서울, 경기남부)이고, 변호사 인력은 총 4명(서울 3명, 경기남부 1명)에 그치고 있으며,
- 변호사가 배치된 경우에도 주된 업무는 장애인학대 상담·조사, 사례지원 및 형사고발에 따른 소송대리·소송지원, 법률자문 등 장애인학대 대응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됨(참고자료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현황).

특히, 개정안에서는 진정 대리, 시정명령 신청 및 소송대리를 ‘소속 변호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기관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확대하거나,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위탁기관의 요건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장애인차별법률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센터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설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접근성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법률지원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모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센터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센터의 기능 및 역할 구분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에서 센터 설치·운영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앙기관은 지역기관 지원, 연구·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고,

지역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 및 사

후관리 등 개별 사건 대응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센터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센터의 업무 범위 및 상호 연계체계 등을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넷째,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 마련, 위탁기관의 요건 설정, 변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 관련 예산 편성,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 및 운영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센터 설치·운영 등 준비에 충분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현행 진정 제도 내 법률지원 정책, 장애인 대상 법률지원서비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⁴⁾에 따라 진정 단계에서 대한법률구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5항⁵⁾에 따라 진정 사건의 각하·이송 시에도 권리구제에 필요한 절차·조치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법률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무료법률상담·소송대리, 변호사 보수비용 지원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대응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학대 예방,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법률 지원 시 본연의 학대 대응 역량 분산 우려, 법률 전문성 부족, 현행 인력 및 예산 구조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관련 현행 법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

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1조(준용규정) ①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참고자료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현황〉

2026년 6월 기준, (단위 : 명)

기관명	현원/변호사	변호사 수행 업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6 / -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15 / 3	• 장애인학대 상담 및 조사 • 사례지원 • 법률지원(소송대리, 법률자문 등 형사고발에 따른 제반 업무)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7 / -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7 /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8 / -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7 / -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5 / -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7 / -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4 / -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15 / 1	• 장애인학대·차별 상담 및 조사 • 사례지원 • 법률지원(소송지원 등 형사고발에 따른 제반 업무)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11 / -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7 / -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6 / -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6 / -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8 / -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7 / -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11 / -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6 / -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8 / -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6 / -	

주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비100%,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비50%, 지방비(광역시도)50%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